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운영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관련법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단순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제7조).

- 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상위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마.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바. 자전거정비소를 법에 따라 자전거수리센터로 하고, 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공영자전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안제13조의2).
- 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 자.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 차.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홍보 및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6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8-318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의의원 : 한은경, 장인수 의원

찬성의원 : 김영희,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운영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관련법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단순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제7조).
- 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상위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마.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바. 자전거정비소를 법에 따라 자전거수리센터로 하고, 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사. 공영자전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안제13조의2).
- 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 자.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 차.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홍보 및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2).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1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현행조례 : 별첨2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법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오산시민 등 공중의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대여하기 위하여 오산시 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호 중 “시민참여”를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을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들어야 한다”를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대중교통수단(도시철도 및 철도)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조제2항”을 “제9조제4항”으로,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 받은 때”를 “시비를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자전거 보관소·대여소 등의 설치·운영)”을“(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운영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역에 자전거 대여소 또는 정비소를 설치”를 “장소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를 “사람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수리센터”로, “보조·용자”를 “보조”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영자전거 등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보관소·정비소”를 “보관소·수리센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 대책 지원 사업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5.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시민의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

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제18조제1항 중 “조례”를 “이 조례”로,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주차장”으로, “관리”를 “운영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u>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u></p> <p>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u>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u></p> <p>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u>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u></p> <p>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u>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5.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u>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생략)</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도로”란 「<u>도로교통법</u>」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법 제3조에 따라 <u>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u></p> <p>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u>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u></p> <p>3. “자전거보관소”란 <u>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u></p> <p>4. “자전거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u>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u></p> <p>5. “공영자전거”란 <u>오산시민 등 공중의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대여하</u></p>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 위하여 오산시 또는 민간 투자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시장의 책무) -----

1. 2. (생략)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신설>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1. 2. (현행과 같음)

3. -----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

4. (현행과 같음)

5.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이하 “활성화계획”-----

-----.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
-----.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대중교통수단(도시철도 및 철도)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5. 자전거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6. (현행과 같음)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활성화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

----- 활성화계획-----
-----.

<삭제>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
· 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신 설>

① (생략)

②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삭 제>

③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주차요금)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 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자전거 보관소·대여소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은 것으로

----- . -----

----- .

② 제9조제4항-----
--- 시비를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

제12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그 관리주체에게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운영) ① -----

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
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
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 대여소 또는 정
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
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
소,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

----- 설치·운영하여야 -----
-----.

②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종합
사회복지관, -----

장소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
관소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
· 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수리는 부품이 소요되지 않
는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2.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
으로 한다.
3.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
를 활용할 수 있다.
4.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④ ----- 사람
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수리센
터-----

서 그 비용을 보조·용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의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향후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유료로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제15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

----- 보조-----

<삭 제>

<삭 제>

제13조의2(공영자전거 등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보관소·수리센터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생략)

<신설>

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
5.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7. 그 밖에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생략)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전거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시민의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전거수리센터-----.

제17조의2(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이 조례-----
-----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주차장 ----- 운영
및 관리-----

-----.

② 시장은 -----

-----.

【별첨1】

관계법령 발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 ⑤ (생략)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별첨2】

현 행 조 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09년 1월 2일 조례 제1006호

일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이용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자전거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향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최

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8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비를 지원 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3조(자전거 보관소·대여소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원, 하천, 대형쇼핑시설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에 자전거 대여소 또는 정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의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며, 향후 이용사항 등을 고려하여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

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8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